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3호 2022. 2. 8(화)

선 람	기관의 장

조례·규칙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1
- 남원시 조례 제 175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4
- 남원시 조례 제 1760호 남원시의회 회기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 남원시 조례 제 1761호 남원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안-----11
- 남원시 조례 제 1762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4
- 남원시 조례 제 1763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16
- 남원시 조례 제 1764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38
- 남원시 조례 제 1765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 남원시 조례 제 1766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64
- 남원시 조례 제 1767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66
- 남원시 조례 제 1768호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69
- 남원시 규칙 제 696호 남원시의회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71
- 남원시 규칙 제 697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84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0호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86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 총 12건 (조례 10, 규칙 2) -

□ 조례 : 10건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비고
175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위임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1760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정례회 합산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2항) 다. 임시회 개최 요건을 정함(안 제3조3항) 라.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조3항) 마. 종전 회의규칙상의 의안의 발의(제출,제안) 주체와 요건 규정을 권고안에 따라 조례에 규정(안 제7조)	
1761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안 제4조) 다. 기타 사항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비고
1762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1763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사항 반영을 위 한 남원시 조례 일 괄정비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1764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신청, 취소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4조) 나. 시설물 관리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0조) 다.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1765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 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제9조제2항)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4항)	
1766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조항 신설 (안 제8조)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비고
1767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다. 이용자 부담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1)	
1768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제명의 변경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농기계임대 대상자 확대(안 제8조) -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임차인의 배상책임 명확화(안 제13조)	

## □ 규칙 : 2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비고
696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가.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16조) 다.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3조)	
697	지방자치법 개정 에 따른 남원시 의회 규칙 일괄 개정 규칙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위임 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

##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연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	「지방자치법」 71조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	다음	그 위원은 다음	표현 개선
		제5조제1항	선임한	선임한 날의	”
		제7조 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위법 개정
		제7조 제4항 중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삭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
		제9조제2항	제1항의 규정	제1항	표현 개선
2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제41조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위법 개정
		제2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
		제3조 제1항 중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 제44조에 따른	”
		제3조 제3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1호	영 제45조제1항제1호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제104조제2항	제117조제2항	”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3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26조 내지 법 제129조에 따른	”
		제2조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31조에 따른	”
4	남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
		제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예비지급 범위)	영 제36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예비지급 범위)	”
5	남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자치법」 제70조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총일수”를 “회의 총일수”로, “110일”을 “120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례회의”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일”을 “60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로, “심의·의결하고, 기타”를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로, “처리하며”를 “처리하고”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관하여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 ----- -----.</p>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p>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 <u>회의 총일수</u>----- ----- 120일 -----.</p>
<p>제3조(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③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p>	<p>제3조(개최 및 회기) ① ----- 정례회 ----- -----. ② ----- ----- 60일 -----. ③ <u>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u></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집회)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 한다.</p>	<p>제4조(집회) ①·②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 그 밖에 -----  
-----.

②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 -----  
----- 처리하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제8조(준용) -----

-----  
----- 필요한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조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 별표 6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를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로 한다.

제2조 중 “사무가”를 “사무의 처리가”로, “해한다고”를 “해친다고”로,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을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  -----.</p>
<p>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u>사무가</u>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u>해한다고</u>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2조(감사청구) -----  -----<u>사무의 처리가</u> -----  -----<u>해친</u>  <u>다고</u> -----  ----- <u>되어 있는 18세</u> 이상의  시민 100<u>명</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호”를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142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남원시 120만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시행령 제8조”를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5조(「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을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한다.

**제7조(「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0조(「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1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7조”로 한다.

**제12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4조(「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으로, “시행령 제80조”를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15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동법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6조(「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로 한다.

**제17조(「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8조(「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8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3조(「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

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24조(「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p>
<p>제3조(작성대상)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생략)</p>	<p>제3조(작성대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 ----- ----. ④ (현행과 동일)</p>
<p>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p>	<p>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78조----- ----- ----- -----. 1. ~ 6.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u>법 제39조제1항제8호</u>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u>법 제42조제1항</u>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3조(적용범위) ① -----                      ----- <u>법 제47조제1항제8호</u> -----                      -----                      -----                      -----                      -----                      -----                      -----                      -----                      -----                      -----</p> <p>제11조(사후관리) -----                      -----                      -----                      -----                      ----- <u>제51조제1항</u> -----                      -----</p>

### 3.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조례)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u>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u>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남원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lt;개정 2012.11.16&gt;</p>	<p>제3조(조례)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                      -----                      ----- <u>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u>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lt;개정 1995.10.5, 2012.11.16&gt;</p>	<p>제7조(공포방법) ----- ----- ----<u>지방자치법</u> 제32조제6항 ----- ----- ----- -----.</p>

#### 4.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u>시행령</u> 제10조----- ----- ----- ----- ----- -----.</p>

## 5.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 법 제7조제4항 ----- 나. (생략)

## 6.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1. (생략) 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설치, 분리 또는 병합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 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 ----- -----

### 8.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4항----- ----- ----- ----- ----- ----- ----- ----- ----- ----- -----

9.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9.5.27., 2015.3.31.&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 ----- ----- ----- ----- -----</p>

10.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 2012.4.2,2017.7.14&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 ----- -----</p>

## 1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 ----- ----- ----- ----- ----- ----- -----</p>
<p>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p>	<p>제7조(설치) ① ----- ----- 제126조 ----- ----- ----- ----- ----- -----</p>
<p>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제13조(설치) ① -- 제127조----- ----- ----- -----</p>
<p>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p>	<p>① ----- ----- 제7조----- ----- -----</p>

## 1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 13.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동일)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 2. (생 략)

14.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과제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시행령 제78조----- ----- ----- -----.</p>

15.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사랑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2002.7.10, 2006.3.2, 2007.12.28, 2012.11.16&gt;</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 ----- -----.</p>



16.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생 략) 2. (생 략)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17.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동일) 1. ----- 「지방자치법」 제16조----- ----- -----

18.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3. (생 략)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8.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3. (생 략) 4.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5.~ 8. (생 략)

19.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 ----- ----- ----- -----.</p>
<p>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p>	<p>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 ----- ----- ----- -----.</p>

2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 2004.12.2, 2007.7.10, 2009.11.24, 2012.11.16, 2016.5.13&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 ----- ----- -----.</p>

2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p>

2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 ----- ----- ----- ----- ----- ----- ----- ----- ----- 「지방자치법」 제139조----- ----- -----.</p>
<p>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4.6.27.&gt;</p>	<p>제80조(설치) ----- ----- ----- 「지방자치법」 제141조----- ----- -----.</p>

23.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5조(보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적용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p> <p>제15조(보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 「지방자치법」 제157조-----.</p>

2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p>

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 ----- ----- ----- ----- -----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남원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남원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남원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남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

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남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3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남원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2. 도로 200미터에 맞닿은 건물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는 해당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

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남원시장은 제외한다)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22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남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6장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23조(직영매장의 설치) 남원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



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하거나 청년이 직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직영매장의 운영) 남원시장은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청년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남원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농어민과 청년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7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남원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제30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3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남원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장 관할 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남원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인회에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남원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남원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 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제3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시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

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38조(위탁관리) ① 남원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주차장 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남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남원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40조(위탁의 취소)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수익금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시에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 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남원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도·감독)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남원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 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意的 철회에 관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제19조제1항 관련)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임시시장 개요	시장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 기간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입점상인 수			
	개설 사유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장옥(場屋):        동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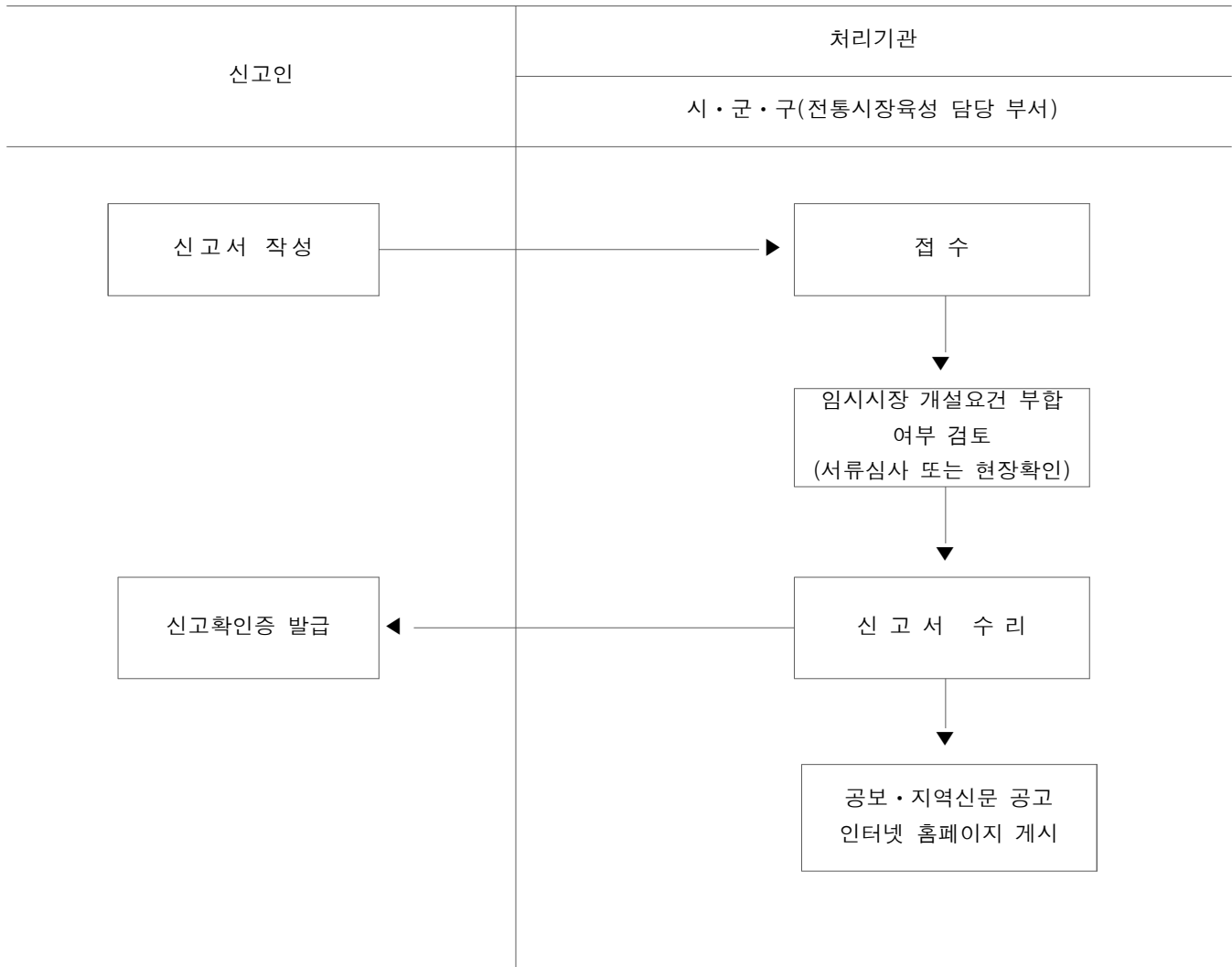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제19조제2항 관련)

1. 시장 명:
2. 개설 자:
3. 소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상인회 등록증(제27조제3항 관련)

- 1. 상인회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시 장 명:
- 5. 업무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제33조제1항 관련)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시장 개요	시장 명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유형태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 수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법인(조합)·상인조직·단체 명		법인등록번호 등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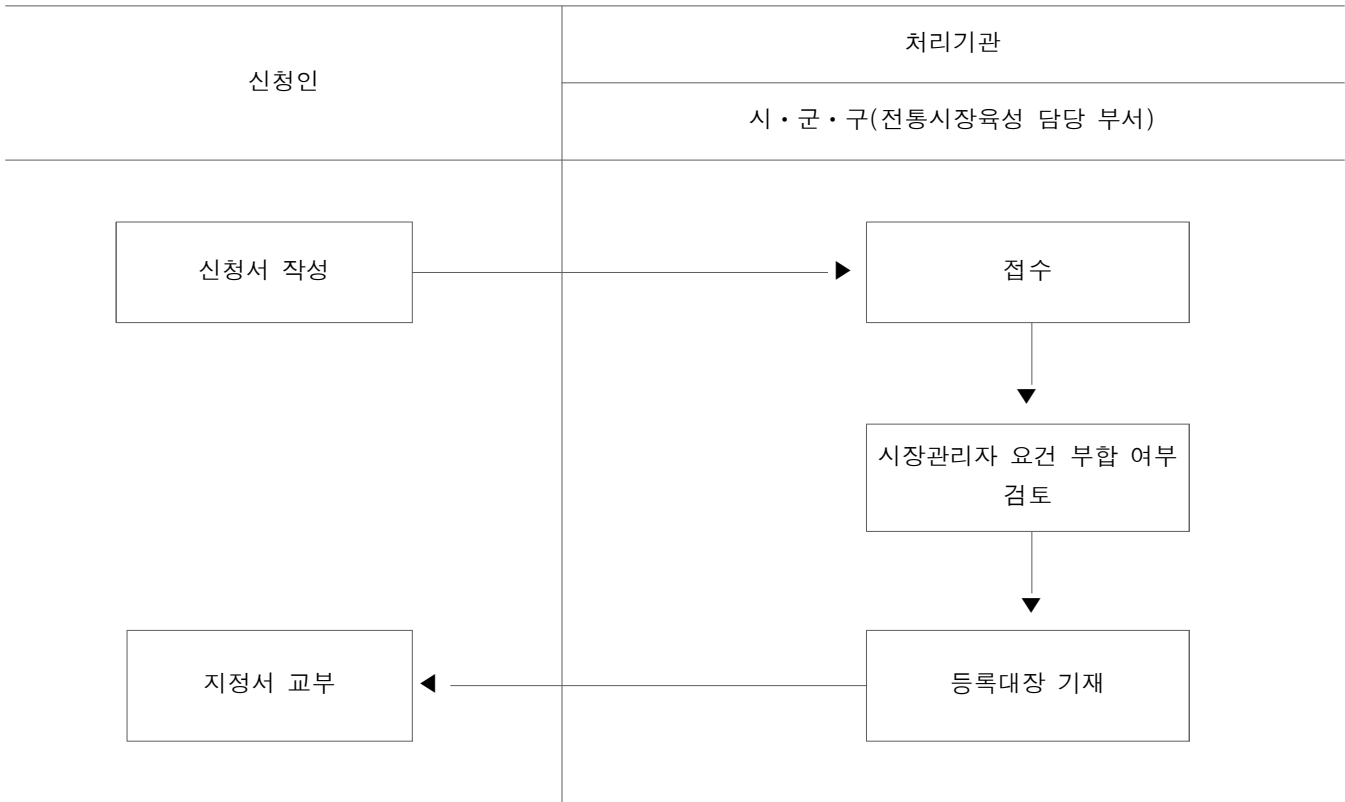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규약 또는 정관 1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보상금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보상금 지급) ① (생략)</p> <p>&lt;신설&gt;</p> <p>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p> <p>&lt;신설&gt;</p>	<p>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p> <p>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시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율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폐기물 배출방법)</p> <p>①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lt;신설&gt;</p>	<p>1. ~ 6. (현행과 동일)</p> <p>7. <u>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시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원으로 할 수 있다.</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를 “이란”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행한다”를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 일자와 시간”을 “요청한 시간”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제5조 관련)

구 분	이용자 부담요금
회관에서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편도)	500원 / <u>1인당</u>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u>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u></p> <p>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u>운행한다.</u></p> <p>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u>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동일)</p> <p>2. ----- -----<u>이란</u> ----- ----- ----- ----- ----- ----- <u>말한다.</u></p> <p>제4조(운행방법) ① ----- ----- ----- ----- ----- ----- <u>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u></p> <p>② ----- ----- ----- ----- ----- ----- <u>요청한 시간,</u>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분점을”을 “사업소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중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수립·실행·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임대기준)”을 “(임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

다”를 “관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를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농기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6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 중 “임대료의 2분의 1”을 “임대료 전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되 한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보완대책(무인경비 용역 등)을 강구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제외) ①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사무국장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사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

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의정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의정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남원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순찰용시계 및 전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국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실 보안점검)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의정담당 책임하에 실시하  
되,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무인당직시 조치사항)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는 야간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회사 연락체계 강화
2.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인하고 퇴청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이동전화로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  
마련
4. 재택당직근무자는 상황발생 접수 후 즉시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
5. 중요공부 및 관인관리 철저 등 기타사항 조치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근무자는 사무국장이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일반전화·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 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중증장애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3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의정담당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① 의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지체 없이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당 직 근 무 일 지 (제10조제2항 관련)

의정담당	사무국장	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숙직, 일직, 재택)

당 직 자	당직명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비 고	
문 서 처 리 상 황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 받은 사항		지시한 사항		보 고 사 항			
조치 사항		확인 조치 결과		인 계 사 항			
특근자 현황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뒷면)

##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연 락 사 항	연 락 기 간	수화자소속,직명	수화자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보안 점검 표(제14조 관련)

부서명 :

구분 점검일	서류 보관 상태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 단속 상태	문 단속 상태	비고	최종 퇴청자		결재	
							점검시각	성명	담당자	담당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제17조제2항 관련)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남원시의회 의장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제19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명 : )

구 분	총 원	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내 응소	2시간내 응소			
총 계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부서별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lt;보고요령&gt;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

##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 개정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1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 중	소개의원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	표현개선
		제8조제2항 중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보상	"
2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 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및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 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남원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 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 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상위법 개정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인원 변경
3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 칙	제1조 중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6조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상위조례 개정

남원시 고시 제2022 - 10호

##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22년 2월 7일

남 원 시 장



###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 붙임

### 3.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방법

- 남원시 환경과(남원시 시청로 60, 4층)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2)로 문의바랍니다.

## [붙임1]

##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내역(변경전)

(단위 : km<sup>2</sup>)

법정구역	행정구역면적 (km <sup>2</sup> )	절대+ 상대 (km <sup>2</sup> )	절대금지지역 (km <sup>2</sup> )	상대제한지역(km <sup>2</sup> )		
				500m	1,000m	2,000m
계	749.846	715.158	29,969	372.744	188.433	124,012
동충동	0.562	0.562	0.562	0.000	0.000	0.000
하정동	0.176	0.176	0.176	0.000	0.000	0.000
죽항동	0.307	0.307	0.307	0.000	0.000	0.000
쌍교동	0.205	0.205	0.205	0.000	0.000	0.000
노암동	2.730	2.73	2.730	0.000	0.000	0.000
어현동	4.304	4.304	4,304	0.000	0.000	0.000
신촌동	2.109	2.109	2.109	0.000	0.000	0.000
천거동	0.170	0.17	0.170	0.000	0.000	0.000
금동	0.833	0.833	0.833	0.000	0.000	0.000
조산동	0.982	0.982	0.982	0.000	0.000	0.000
왕정동	1.117	1.117	1.117	0.000	0.000	0.000
신정동	2.290	2.29	0.000	2.218	0.072	0.000
화정동	2.764	2.764	0.000	2.138	0.626	0.000
향교동	1.993	1.993	1.993	0.000	0.000	0.000
용정동	3.383	3.383	0.000	3.128	0.255	0.000
광치동	7.342	7.342	0.000	5.288	1.729	0.325
내척동	3.837	3.838	0.000	3.161	0.677	0.000
산곡동	1.892	1.892	1.892	0.000	0.000	0.000
도통동	1.035	1.035	1.035	0.000	0.000	0.000
월락동	2.486	2.486	2.486	0.000	0.000	0.000
고죽동	3.746	3.746	3.746	0.000	0.000	0.000
식정동	3.321	3.321	1.016	1.891	0.414	0.000
갈치동	4.397	4.398	0.000	2.873	1.466	0.059
운봉읍	68.967	66.439	0.000	36.485	16.584	13.370
주천면	54.561	49.501	0.000	24.526	12.352	12.623
수지면	31.345	31.026	0.000	17.013	8.355	5.658
송동면	33.154	33.154	0.000	24.874	8.138	0.142
주생면	26.101	26.101	0.000	17.470	7.690	0.941
금지면	33.425	31.51	0.000	18.382	5.832	7.296
대강면	43.800	43.172	0.000	25.401	12.596	5.175
대산면	36.033	36.033	0.000	21.057	12.410	2.566
사매면	32.156	32.156	0.000	21.759	9.449	0.948
덕과면	23.584	23.583	0.000	17.680	5.809	0.094
보절면	42.000	41.162	0.000	22.606	12.199	6.357
산동면	53.865	53.715	0.000	19.124	18.117	16.474
이백면	43.516	43.517	4.306	19.131	11.626	8.454
인월면	36.366	35.442	0.000	19.476	8.577	7.389
아영면	35.369	35.357	0.000	22.719	8.773	3.865
산내면	103.623	81.307	0.000	24.344	24.687	32.276



## [붙임2]

##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내역(변경후)

(단위 : km<sup>2</sup>)

법정구역	행정구역면적 (km <sup>2</sup> )	절대+ 상대 (km <sup>2</sup> )	절대금지지역 (km <sup>2</sup> )	상대제한지역(km <sup>2</sup> )		
				500m	1,000m	2,000m
계	750.316	715.646	30.020	375.373	186.472	123.781
동충동	0.562	0.562	0.562	0.000	0.000	0.000
하정동	0.176	0.176	0.176	0.000	0.000	0.000
죽향동	0.307	0.307	0.307	0.000	0.000	0.000
쌍교동	0.205	0.205	0.205	0.000	0.000	0.000
노암동	2.731	2.731	2.731	0.000	0.000	0.000
어현동	4.299	4.299	4.299	0.000	0.000	0.000
신촌동	2.110	2.11	2.110	0.000	0.000	0.000
천거동	0.170	0.17	0.170	0.000	0.000	0.000
금동	0.835	0.835	0.835	0.000	0.000	0.000
조산동	0.983	0.983	0.983	0.000	0.000	0.000
왕정동	1.118	1.118	1.118	0.000	0.000	0.000
신정동	2.290	2.29	0.000	2.218	0.072	0.000
화정동	2.764	2.764	0.000	2.138	0.626	0.000
향교동	1.994	1.994	1.994	0.000	0.000	0.000
용정동	3.386	3.386	0.000	3.131	0.255	0.000
광치동	7.346	7.346	0.000	5.292	1.729	0.325
내척동	3.860	3.86	0.000	3.183	0.677	0.000
산곡동	1.892	1.892	1.892	0.000	0.000	0.000
도통동	1.035	1.035	1.035	0.000	0.000	0.000
월락동	2.487	2.487	2.487	0.000	0.000	0.000
고죽동	3.747	3.747	3.747	0.000	0.000	0.000
석정동	3.365	3.365	1.062	1.890	0.413	0.000
갈치동	4.398	4.398	0.000	2.873	1.466	0.059
운봉읍	68.989	66.458	0.000	36.800	16.288	13.370
주천면	54.731	49.678	0.000	25.116	12.087	12.475
수지면	31.413	31.094	0.000	17.016	8.409	5.669
송동면	33.196	33.196	0.000	25.182	7.872	0.142
주생면	26.127	26.127	0.000	17.443	7.748	0.936
금지면	33.474	31.559	0.000	18.431	5.832	7.296
대강면	43.801	43.173	0.000	25.370	12.626	5.177
대산면	36.044	36.044	0.000	21.708	11.770	2.566
사매면	32.158	32.158	0.000	22.423	8.787	0.948
덕과면	23.600	23.599	0.000	17.702	5.803	0.094
보절면	42.003	41.165	0.000	22.608	12.200	6.357
산동면	53.822	53.673	0.000	19.081	18.118	16.474
이백면	43.579	43.579	4.307	19.188	11.630	8.454
인월면	36.444	35.519	0.000	19.508	8.622	7.389
아영면	35.363	35.363	0.000	22.726	8.772	3.865
산내면	103.512	81.201	0.000	24.346	24.670	32.185

#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